제 2019-110호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문학 저작권 침해에 사법해석 적용해 높은 손해배상액 인정

북경사무소

현황

○ 베이징중칭원문화미디어회사(北京中青文文化传媒有限公司, 이하 '중칭원미디어')와 바이두회사(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간의 온라인 문학 저작권 침해 소송이 1심, 2심 그리고 재심을 거쳐 무려 6년 만에 최종 확정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손해배상액이 재심에서 크게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임

주요 내용

○ 중칭원미디어는 지난 2013년 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온라인 문학 3권의 저작권을 바이두 산하의 바이두원쿠(百度文库)와 바이두 모바일 검색(百度移动搜索) 및 바이두 셔우지 주셔우(百度手机助手)가 침해했다며,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1심 소송에서 중칭원미디어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50.3만 위안, 한화 약 8,600만 원)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상소심 법원인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림. 하지만 이에 불복한 원고 중칭원미디어가 최고인민법원에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짐

○ 최고인민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피고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원고 중칭원미디어에게 경제적 손실 275.9만 위안(한화 약 4,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이번 재심 판결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와 계산방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즉 1심과 2심이 50.3만 위안의 비교적 낮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과 달리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275.9만 위안이라는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함

○ 중칭원미디어는 2심 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과 2심 소송에서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될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4조가 규정한 '피고의 침해복제품의 수량 × 원고의 단품이윤'이라는 계산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법관이 손해배상액을 직접 결정함. 이와 달리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해석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큰 차이가 발생함

- 원심법원인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과 상소심 법원인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온라인 서적(전자책)을 읽는 독자들은 보통 수차례 인터넷에 접속해서 수회에 걸쳐서 읽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기 때문에 1회의 독서량을 가지고 작품 전체를 읽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즉, 해당 작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법관이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함

- 이와 달리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에서 “저작권법 제49조*, 사법해석 제24조**에 근거하여 바이두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칭원미디어의 주장처럼 침해 작품을 읽은 인원수 및 다운로드 한 수량을 가지고 침해복제품의 수량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문제 된 작품의 복제품을 제작한 개당 가격에서의 이윤과 관련하여, 전자책의 경우 권리자가 서적의 시장가격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전자책의 시장 판매가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문제 된 복제품의 단위(개당) 이윤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손해배상액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달리해서 판단함

* 저작권법 제49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반드시 권리자의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 손실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수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한다.

** 제24조 권리자의 실제 손실은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의 발행으로 인한 감소량 또는 침해복제품의 판매량 및 권리자가 해당 복제품을 제작한 개당 가격의 이윤을 곱하여 계산한다. 발행 감소량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침해복제품 시장의 판매량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 아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요지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작권 침해 복제품의 수량 및 침해 내용의 비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서적을 구매 또는 독서하는 습관과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소비자가 전통서적 이외의 전자책을 구매 또는 구독하는 현상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책을 다운로드 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을 획득 및 열람할 수 있다. 네티즌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책 읽기 또는 다운로드의 방식으로 침해 작품을 획득했는데, 이러한 각각의 저작권 침해 작품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문제 된 작품을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침해 작품을 읽은 인원수 및 다운로드 한 수량을 가지고 침해된 작품의 수량을 확정 짓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 둘째, 침해복제품의 단위(개당) 가격: “전자책이든 아니면 전통서적이든, 작가와 출판사 등 권리자들은 작품의 구체적 상황 및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서적의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전자책의 경우, 그 제작, 판매, 복제, 전송, 저장의 방식이 전통 서적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상반된 증거가 없는 경우, 권리자가 전자책을 판매하는 시장가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해당 복제품을 발행하여 창출한 단위이윤을 확정할 수 있고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셋째, 침해자의 주관 과실: “주관적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문제 된 침해 저작물의 전송 수량, 업로드한 자의 신분, 전자책의 글자 수, 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침해자가 보통의 주의의무만으로도 문제 된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침해자가 충분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문제 된 침해행위는 ‘반드시 알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

평가

ㅇ 이번 사안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례와 달리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상당히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비록 중국법이 대륙법계에 속해서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하급 법원들이 최고인민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과거보다 더욱 높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 나아가 이로 인하여 온라인 문학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아직 동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존 서적과 유통방식 및 독서방식이 다른 전자책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고인민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인민망(人民网)
- http://ip.people.com.cn/n1/2019/0802/c179663-31271821.html